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November 20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4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9일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주요 용어들(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그룹에 대한 기준 및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화 되었으며, 실효세율 및 추가 세율 계산방법, 제반 특례 및 신고 및 납부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정의 명확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 펀드, 투자펀드 등) 요건 명확화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회계상 순손익에 하기 조정사항을 반영

구분	조정사항
필수조정	조세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지분관련 손익 제외, 유형자산재평가손익 포함, 비대칭 외환손익 제외,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제외,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효과 반영 등
선택조정	회계상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공정가치·손상 평가 대신 실현주의 회계처리로 조정 등

- **조정대상조세 계산:**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세전이익 산출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가산,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의 차감 등)을 반영
-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추가세액 계산 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에서 차감되는 실질기반소득제외 계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추가세액 계산 예외 사항 반영
- **추가세액 과세:** 소득산입규칙 관련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계산, 적격소득산입규칙 요건, 소득산입규칙 중복적용 방지를 위한 계산 방법(IIR Offset), 소득산입보완규정의 국가별 배분비율 계산관련 세부사항 반영
- **제반 특례:** 최소적용제외 특례, 소수지분하위그룹 추가세액 별도 계산 특례, 합류 및 이탈 구성기업의 취급,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조직개편 요건,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전환기적용면제, 공동기업의 범위 등 다양한 특례에 대한 세부 사항 반영
- **신고 및 납부 등:**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세부사항 및 제출 기업,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고 및 납부 관련 환율 적용, 과세당국의 수시부과 및 결정/경정 등

2)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이번 장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칙

구분	비고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용어 정의	<input type="checkbox"/>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요건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이 항목별로 포함(*)된 기업의 집단 - (*) 규모 또는 중요성 기준의 미충족, 매각 목적의 보유 등의 사유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기업도 포함 - (지배지분)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이 회계기준에 따라 항목별 연결 대상인 기업 등에 대한 해당 소유지분 - (연결재무제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된 재무제표로서 인정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거나, 필요한 조정을 거친 재무제표(*) (*) 국제회계기준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되어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한 사업연도에 7천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합계 편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2) 추가세액의 계산

구분	비고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 (필수조정사항)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금액을 필수적으로 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순조세비용) 가산 ② 배당수익 차감 ③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 손익 등 조정 ④ 회계상 통화와 세무상 통화 차이에 따른 외환 손익 조정 ⑤ 불법적인 지출(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뇌물 등) 가산 ⑥ 전기오류수정·회계정책 변경은 당기에 차감·가산 ⑦ 연금비용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납입 금액(사외적립 자산기여금 등)으로 조정 ⑧ 구성기업간 거래에서 적용한 금액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 ⑨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가산 등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 (선택조정사항)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방법은 선택적용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식기준보상거래 시 회계상 인식한 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가능(5년 선택 조건) ② 자산·부채의 평가·손상관련 손익은 제외하고, 처분시점에 일괄 반영 가능(5년 선택 조건) ③ 부동산 처분이익은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하고, 선택사업연도 및 이전 4개 사업연도에 배분 가능 ④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p>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시 연결회계조정 반영 가능(5년 선택 조건)</p> <p>⑤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제외</p> <p>⑥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 중 내부거래의 제거 외의 사항에 대한 연결회계조정 반영 가능</p>
<p>구성기업 회계기준이 최종모기업과 상이한 경우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p>	<p><input type="checkbox"/>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 가능한 회계기준</p> <p>① 회계기준 사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장부가 ②의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관리 - 회계장부 정보를 신뢰 가능(회계감사 받을 것) - ②의 회계기준 사용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과 1백만유로 미만의 영구적 차이(영구적 차이가 1백만유로 이상 발생시 최종모기업 회계기준 사용) <p>② 사용가능한 회계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계기준 및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각 국가의 공인회계기구에서 승인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p>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계산</p>	<p><input type="checkbox"/>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의 별도 재무제표 작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p> <p><input type="checkbox"/>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중인 조세조약, 국내법, OECD 모델조약 등에 따른 고정사업장) 조세조약 또는 소재지국의 법률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비용 - (상기 외 고정사업장) 본점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귀속되는 수익·비용
<p>조정대상조세의 정의 및 제외 항목</p>	<p><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 대상조세의 정의 및 제외 항목</p> <p>① 대상조세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기업의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세금 - 적격분배과세제도(소득 발생시점이 아닌 배당지급시점에 과세되는 제도)하에서 배당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이자, 임차료, 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 소득·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 <p>② 대상조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 (적격소득산입규칙·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액)

<p>조정대상조세 조정사항</p>	<p>□ 조정대상조세는 당기법인세비용에 ①가산액, ②차감액, ③자본·기타포괄이익에 계상되는 대상조세, ④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계산</p> <p><가산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전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발생시 인식한 글로벌 최저한세 결손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사용액 -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에서 차감처리된 과세 항목의 당기 납부액 -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적격환급가능 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p><차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 세액공제·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한 당기법인세비용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p>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p>	<p>□ 초과이익 산출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 제외소득금액의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내 각 구성기업의 ①인건비 및 ②유형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 <p>①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5%</p> <p>②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에 따라 기록된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5%</p> <p>※ '24~'32년까지는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에 5% 제외비율 대신 연도별 차등 제외비율* 적용</p> <p>* (인건비) 9.8~5.8% / (유형자산) 7.8~5.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 <p>□ 신고구성기업은 선택에 따라 추가세액 계산 시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p>

(3) 추가세액의 과세

구분	비고
<p>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p>	<p>□ 적격소득산입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산입 규칙 및 이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 해당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
<p>소득산입규칙 중복적용 방지를 위한</p>	<p>□ 모기업의 추가세액 배분액에서 차감하는 금액</p>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계산	- 국내소재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추가세액 × 상위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	---

(4) 특례

구분	비고
최소적용제외 특례 세부사항	<input type="checkbox"/>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
전환기적용면제 (전환기 세이프하버)	<input type="checkbox"/>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국가별보고서 기준 ①~③중 하나 충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액 요건) 매출액과 세전이익이 각각 1천만유로, 1백만유로 미만 ② (간이실효세율 요건)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24년: 15%, '25년: 16%, '26년: 17% ③ (초과이익 요건) 세전손실이거나,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 <input type="checkbox"/> 전환기적용면제의 요건 적용 시 세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 지분의 전부가 국조령 §154①에 따른 소유자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적용 -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 공제가능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용 - 국가별보고서에 투자구성기업, 해당 기업의 주주 구성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구성기업) 매출액, 세전손익, 법인세 미고려 - (주주구성기업) 직접보유비율 만큼 고려 - 소유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순손실 금액이 5천만유로 초과 시 세전손익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전환기적용면제는 아래(①~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국적구성기업 ② 하나의 국가별보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 그룹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③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는 국가 ④ 전환기적용면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 <input type="checkbox"/> 과세당국이 적용면제와 관련하여 요구한 소명(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이 해소되지 않은

	<p>경우에는 전환기적용면제 미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은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 통보하고,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공동기업의 범위	<p><input type="checkbox"/> 공동기업* 특례 주요 내용 정의</p> <p>* 최종모기업이 50%이상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최종 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사용하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는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 - 공동기업그룹 저율과세 시 그 모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5) 신고 및 납부

구분	비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세부사항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최초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p>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기업	<p><input type="checkbox"/> (지정국내기업)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내구성 기업들에 의해 지정된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국내기업에는 신고서 제출의무, 국외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제출의무가 부여 <p><input type="checkbox"/> 자동정보교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최종모기업 또는 지정신고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 국내기업 제출의무 면제</p>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항제3호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항제3호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서: 1억원

3) 시사점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24.1.1 시행)이 위임하고 있던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및 조정대상조세의 계산방법 등이 구체화되었고,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특례(전환기 적용 면제 등), 신고·납부 등 관련된 세부사항을 포함합니다.

국내 다국적기업그룹 중 직전 4개 사업연도(2020 ~ 2023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이상이면, 2024 사업연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가별 실효세율에 대한 계산 및 추가세액 발생 여부 등 사전 영향 분석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서 IAS 12 (법인세 기준서) 개정에 따라 2023년 기말 재무제표에 글로벌최저한세 영향에 대한 주석 공시가 필요하고, 2024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시부터 추가세액에 대한 미지급법인세/법인세비용 계상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공시 의무를 이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적절한 프로세스 구축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서 0412 (2023.09.06)

제목: 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기각)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들")는 각각 금융/보험업 및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22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처분청은 하기 사유에 따라 세액을 경정 및 고지함
 - A. 청구법인들은 계열법인인 CCC와 아파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거래(이하 "쟁점용역")를 진행하였고, 계열법인 CCC와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 수익률이 계열법인 CCC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들 간의 거래의 수익률과 비교 시 평균 대비 24.71% 과다 부담한 부분 손금불산입
 - B. AAA 주식회사의 비서실, 경영기획팀 및 법무감사팀 관련 직원 인건비 등을 공동경비로 보아 주요 계열법인 매출 기준으로 안분하여, 초과부담한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한 후 손금 불산입
- 청구법인은 상기 세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① 하도급 거래(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②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 인건비 등 경비를 그룹사 공동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의 초과부담분(쟁점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1.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 산정방법(계열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수행된 거래의 각 사업연도별 수익률 산정)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시가 산정방법에 위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청이 용역 시가를 산정할 시, 개별 용역 거래 단위로 산정하지 않고, 여러 용역거래 집합총액으로 수익률을 산정한 것은 적합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용역의 시가를 '당해 용역의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거래의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u>과세대상 거래와 유사한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비교대상 거래의 수익률에 따라 시가를 산정함</u> 	<p>1.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 산정방법은 법인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종류의 용역이라도 개별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만일 쟁점용역과 유사한 1개의 용역만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유사하지 않은 용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염려가 있으므로 <u>조사청이 용역 거래의 집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것은 개별 거래의 상황에 따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에 해당</u> -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제공한 용역 중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① 공사종류, ② 건물용도, ③ 원가구성으로 분류된 공사용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분석대상거래와 비교대상 거래의 유사성을 확인함
<p>2. AAA 주식회사의 비서실, 경영기획팀 및 법무감사팀 등은 AAA 주식회사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해당 조직 운영에 소요된 경비(노무비)는 청구법인 AAA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A의 주요 계열법인들은 각자 별도의 경영기획팀, 법무팀 및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AAA 주식회사의 비서실, 경영기획팀 및 법무감사팀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음 - AAA의 경영기획팀, 법무팀 및 비서실이 주요 계열법인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하더라도, 이는 <u>지주회사로서의 경영관리 업무에 해당</u>.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는 지주회사의 고유 업무이고 그 비용도 당연히 지주회사의 부담이라고 판결하였음 	<p>2. AAA 주식회사의 비서실, 경영기획팀 및 법무감사팀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가 영위한 사업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닌 명백한 그룹사 공동경비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A의 경영기획팀, 법무팀 및 비서실과 같이,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부서의 운영에 든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u>청구법인 AAA 주식회사 산하의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등은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등 그룹 지원부서의 역할 수행</u> - AAA는 2018년 5월 그룹지주사로 전환되었고, 그 전까지는 <u>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았고</u> 지주사의 부재하에서 그룹 내 관계사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그룹지원부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이 건 부서들의 운영에 소요
된 경비는 그룹 전체의 공동경비에 해당

4) 판단

- ① 유사한 용역이라도 수익률에 미치는 요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용역 거래의 집합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조사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점,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래이거나 비교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거래는 제외하여 과세대상 거래와 유사하지 않은 거래는 쟁점용역에 대한 시가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 거래와 비교대상 거래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균 24.71%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② AAA 주식회사는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AAA 주식회사는 2018년 5월 그룹 지주사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룹 지주사의 부재 하에서 그룹 전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AAA 주식회사가 경영기획팀 등을 통해 그룹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 주식 회사의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의 인건비 등 경비를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와 계열사들 간의 공동경비로 보아 AAA 주식회사 초과부담분(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03 관세

종합보세구역 국산원유 블렌딩 수출 가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지정요건 완화

1) 개요

관세청은 2023년 11월 10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14호, '20.4.27.)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고, 11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석유 블렌딩 시장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신설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금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유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산 석유제품의 반입 및 혼합(블렌딩) 후 수출 절차 신설

- **(개정 사유)**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혼합하여 혼합(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개정 내용)** 국산 석유제품을 “환급대상 수출물품”으로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혼합(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 블렌딩 절차, 수출 절차 등 관련 절차 신설(§25)

*석유제품 등을 저장하거나 혼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종합보세구역에 한정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 **(개정 사유)**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활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함
- **(개정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 기준을 1/2로 완화 (§6①)

(3) 종합보세구역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등 간소화

-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시 행정처리 기간 단축(90→30일) 및 첨부서류 축소*로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4②,③)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및 지정요건 기준(외국인투자금액, 수출금액, 외국물품 반입물량) 증명자료 제출 생략
- 견본품 반출입 내역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서식 마련(§17④)
- 원료과세 적용 신청 시 물품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세관공무원이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23)

3) 시사점

금번 개정안은 지난 9 월 14 일 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 및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출 신고를 마친 상품은 국내에서 가공이 안 돼 외국 중개업체들이 국산 석유제품을 갖고 블렌딩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고 각종 세금 이 발생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있어 외국의 석유 중개업체들은 국내에서 블렌딩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국산 석유제품임에도 싱가포르 등에서 블렌딩 작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안 및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 석유제품 등의 블렌딩이 허용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신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증빙서류 구비 등의 요건 및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의 전량 수출 의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업은 해당 절차의 이행과 충족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적절한 프로세스의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